

## 김영남 상표법 객관식 제5판 정오표(ver.2)

[상표법 객관식 정오표 ver.2]

93번 복수정답

238번 문제 ②번 수정

254번 복수정답

1. 중요문제 148제

문제번호	정정 전	정정 후
93번	정답 ⑤	정답 <b>①⑤(복수정답처리)</b>
131번	문제 ②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b>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b>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②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b>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b>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사유에 해당한다.
132번	문제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b>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 정보제공사유는 상호 간에</b> 동일하다.	문제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b>상표법 제54조의 거절이유는 이의신청이유, 정보제공사유와</b> 동일하다.
147번	문제 ② 등록상표의 금지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b>상품을</b>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친다.	문제 ② 등록상표의 금지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b>상표를</b>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b>사용하는 경우</b> 까지 미친다.
157번	문제 (ㄹ)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b>카목</b>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서 이룩한 성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 (ㄹ)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b>파목</b>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서 이룩한 성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170번	문제 ② <b>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거나 상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수량에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b>	문제 ② <b>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거나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b>
175번	문제 ②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란 <b>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b>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오로지 상호로서만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②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오로지 상호로서만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6번	해설 ② 제90조 제1항 <b>제3호</b>	해설 ② 제90조 제1항 <b>제5호</b>
238번	문제 ② 제92조 제2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b>카목</b> )	문제 ② 제92조 제2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b>파목</b> )
254번	정답 ③ 해설 ①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2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i)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ii) <b>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 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시행규칙 제86조).</b>	정답 ①, ③ 해설 ①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2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i)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ii) <b>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시행규칙 제86조).</b>

## 2. 모의고사

문제번호	정정 전	정정 후
1회 21번	해설 <b>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상표법 제5조).</b>	해설 <b>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의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상표법 제5조).</b>
1회 24번	문제 ②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특정인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b>적용된다.</b>	문제 ②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특정인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b>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b>
2회 25번	문제 ㄱ.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b>다음 각 호의</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b>다음 각 호의</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ㄱ.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b>거절이유(상표법 제54조 각 호)</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b>거절이유(상표법 제54조 각 호)</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회 29번	문제 ③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문제 ③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u>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u>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u>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u>
--	--	--